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9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9월 22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“50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내”로 줄이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
- 다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위원수를 “15명 이내”에서 “20명 이내”로 확대·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를 “15명 이내”에서 “20명 이내”로 확대함(제3조제1항)
-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버스정책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서울특별시장”를 “시장”으로 자구 조정(제2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버스정책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서울특별시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서울시장 제출안	수정안(위원회안)
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<u>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, <u>서 울 특 별 시 장 (이 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	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 ----- <u>버스정책</u> <u>시민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, <u>서울특 별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 -----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,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.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15명</u> ----- ----- <u>구성하며</u>, <u>위촉직 위원의 경우</u> <u>특정 성별이 10분의 6</u> <u>을 초과하지 아니하</u> <u>도록 하여야 한다</u>.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 <시장 제 출안과 동일></p>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“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의2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버스정책 시민위원회”를 “버스정책시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버스정책 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50명”을 “20명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1부시장”을 “도시교통실장”으로,

“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1년으로 하되”을 “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다만,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12조 제2항제3호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의2(위원회의 설치) 시내버스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, <u>서울특별시</u>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실 소속하에 <u>버스정책 시민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서울특별시 <u>버스정책 시민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,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</u>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행정1부시장</u>으로 하</p>	<p><u>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의2(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<u>서울특별</u> <u>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<u>버스정책시민위원</u> <u>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<u>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,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 <u>20명</u> ----- <u>구성</u>하 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이 <u>10분의 6</u>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<u>도시교통실장</u>-----</p>

고, 부위원장은 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한다.

③ (생략)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버스정책, 노선조정, 시설 개선, 경영합리화, 시민혁신 등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버스정책분과위원회

가.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
나.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

다.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·개선에 관한 사항

라. 이해당사자간 갈등·조정·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

마.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

2. 노선조정분과위원회

가.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

-----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
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----. 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분과위원회) ① <삭 제>

사항

나.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

3. 시설개선분과위원회

가. 시내버스 차량개선 및 안전성 향상 관련 사항

나.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 관련 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4. 경영합리화분과위원회

가.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

나.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·관리·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

5. 시민혁신분과위원회

가. 시민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 평가제 및 현장조사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

나.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

② 분과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,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<삭 제>

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12조(시민모니터단) ① (생략)

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1. 2. (생략)

3. 분과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점검

<삭 제>

제7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다만,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12조(시민모니터단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2. (생략)

3. 위원회-----
